

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

<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>

'21. 11. 30. 제정

I. 목 적

-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II. 적용 대상

- 협정상대국(수출당사국) 영해 밖(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)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(당사국)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품(이하 “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”이라 한다). 다만,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(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)을 충족해야 함

III. 업무처리 지침

- 1)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(어획)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(수출당사국)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(수출당사국)의 영역으로 인정함
- 2) 협정상대국(수출당사국)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(단순환적 포함)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
- 3)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(비가공)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
 - ※ 「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」(관세청 지침, '20.7.17) 참조

IV. 시행일자

-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